

리스크 피하는 '건강한' 내부거래 방법 공정성·정당성을 '심의'하라

최근 회사의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기업은 거래조건의 공정성
보장 위해 외부기관 자문 받아야

기업집단 내부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M&A나 회사 운영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불공정한 경우 경영진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 부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은 원재료 조달, 제조, 판매, 유통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도모, 규모의 경제 실현, 거래비용 절감,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위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추진할 정당한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 부당한 내부거래는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법령은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회사는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할 수 없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히 세금을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으며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등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 '갑을' 모두 과징금 부과대상

특히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과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으로 거래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방식의 통행세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물량(갑을) 물아 주기도 규제한다. 최근 기업집단 내 광고·물류·전산 등에서 물량 물아 주기가 문제되자 규제대상을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서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완화했는데 실제 집행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경. 기업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3년 공정거래법이 도입됐다. 최근 규제 대상이 완화됐지만 실제 집행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는 모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지원주체는 지원금액만큼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징금 제도는 부당한 이익의 박탈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이 있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행정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부당이익액과 과징금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가 모두 과징금을 부담하는 경우 과징금을 안분하여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수가 있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 또는 30% 이상인 상장사와 거래 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3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됐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적정한 검증 절차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 내지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부의 편법적 이전 방지,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정책적 목표였다면 조세나 형사 집행의 강화, 소수 주주권 보호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들은 첫째, 거래 상대방의 선정·절차·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내부거래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것이다. 둘째, 제 3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준해 실질적인 실사와 협상 과정을 거치고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내부거래심의기구와 내부 심의규정을 두고 운영해야 함은 물론이다.①



송창현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LL.M.), 미국 UC버클리 법과대학원 법학박사(J.S.D.),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M&A·기업소송·정부규제)